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86
----------	-------

발의연월일 : 2026. 3. 23.

발 의 자 : 김상훈 · 고동진 · 김선교
박충권 · 이종욱 · 이현승
김예지 · 이만희 · 최보운
안철수 · 유용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영국 등은 수시로 배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 3~4회로 제한되어 있음. 수시배당이 가능한 미국의 경우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식 등의 금융투자 자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배당금이 월급처럼 소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임.

반면,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금융자산은 예금에 편중되어 있고 7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자산 대비 금융투자 자산 비중은 0.2%에 불과함. 또한, 주주환원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나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은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며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이에 회사의 누적성과를 토대로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배당하는 수시배당을 도입함으로써 주주환원 증가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2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12제1항 중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를 “사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로써”로,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분기배당금”을 “수시배당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분기배당액”을 각각 “수시배당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를 “제354조제1항, 제458조”로,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제635조제1항제22호의 2”를 “제635조제1항제27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65조의18제17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분기배당금”을 “수시배당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 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사업연도 중 그 사 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 사회 결의로써</u> 금전으로 이익 배당(이하 “<u>분기배당</u>”이라 한 다)을 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른 <u>분기배당금</u>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 관 또는 이사회에서 그 지급시 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④ <u>분기배당</u>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을 한도로 한다.</p> <p>1. ~ 3. (생 략)</p> <p>4. <u>분기배당</u>에 따라 해당 결산 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 금의 합계액</p>	<p>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 ----- -----<u>사업연도 중 이사회</u> <u>의 결의로써</u>----- ----- ----- -----<u>수시배당</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수시배당금</u>----- ----- ----- -----.</p> <p>④ <u>수시배당</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수시배당</u>----- ----- -----</p>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4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생략)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

제635조제1항제27호

⑧

수시배당

제462조제3항

및 제4항

⑨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16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u>분기배당</u> 을 한 경우	17. ----- ----- ----- <u>수시배당</u> -----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u>분기배당금</u>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8. ----- -- <u>수시배당금</u> ----- -----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u>분기배당</u> 을 한 경우	19. ----- --- <u>수시배당</u> -----
20. ~ 25. (생략)	20. ~ 25. (현행과 같음)